**공동투자형기술개발과제 공모 신청서**

**1. 일반 현황**

□ 삼성전자 거래 □ 삼성전자 미거래

|  |  |  |  |
| --- | --- | --- | --- |
| 업체명 |  | 업체코드 |  ·전자 거래업체만 기입 |
| 사업자등록번호 |  | 홈페이지 |  |
| 주 소 |  | 설립년월일 |  |
| 업 종 |  | 주생산품(납품처) |  |
| 대표자 | 성 명: 생년월일:전 화: 핸 드 폰:이메일: 팩 스: |
| 과제책임자 | 성 명: 생년월일:전 화: 핸 드 폰:이메일: 팩 스: |
| 실무담당자 | 성 명: 생년월일:전 화: 핸 드 폰:이메일: 팩 스: |
| 회사현황 | 국내 | 계 | 비 고 |
| 총자본금 |  | 억원 |  |
| 전년매출액 |  | 억원 |  |
| 종업원(정규직) | 총원 | 경영 일반 | 연구 개발 | 생산 | 기타 |
|  |  |  |  |  |
| 지식재산 | 출원중 | 등록 | 계 |
|  | 특허 |  |  |  |
| 실용신안 |  |  |  |

**2. 제안 내용**

|  |  |  |  |
| --- | --- | --- | --- |
| 공모 분야※ |  | 관련 제품(사업부/연구소) |  |
| 과 제 명 | ·과제명은 객관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 요망) |
| 최종목표 요약 |  |
| 키워드 | 한글(5개) |  |  |  |  |  |
| 영문(5개) |  |  |  |  |  |

※ 공모 분야 : 신기술, 신소재, 친환경, 설비 및 부품 국산화, S/W, 기타 중 택일

※ 키워드 : 3개 이상 작성

|  |  |
| --- | --- |
| ※ 제출한 기술자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술 IP 제출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 임치 후 증빙자료 제출 요망주요 개발내용 | ·개발방향, 개발목표, 개발기간, 개발내용, 참여인력 등  |
| 제안 기술의차별점 | ·동종 기술 대비 장점, 차별화 포인트, 기술 선행 수준 등 상세 기술 |
| 기대 효과 | ·협력사 및 전자의 예상 재무성과 등 과제 완료 시 획득 가능한  유무형의 기대효과 기술  |
| 참여연구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 성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전공 및 학위 | 자격증 | 신규채용여부 | 본 과제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총액(천원) |
| 학 교 | 전공 | 학위 | 취득년도 | 종류 | 취득년도 |
| 신청기업 |   |   |   | 가나 | 전자 | 석사 | 2000 |   | 2000 | X | 30% | - | 40,000 |
|   |   |   |   |   |   |   |   |   |   |   |   |   |
| 채용예정 | - | - | - | 공학 | 석사 |   |   | - | o | 50% | - | 24,000 |
| 외부참여연구원(해당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기관(해당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현황 (위탁연구기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 | 성명 | 구분 | 건수 | 사업명 | 개발기간 | 과제명 | 참여율 |
|  |  | 책임자 | 3 |  |  |  |  |
|  |  |  |  |
|  |  |  |  |
| 참여연구원 | 2 |  |  |  |  |
|  |  |  |  |

 |

**3. 개발자금 지원 신청 내역**

(천원)

|  |  |  |  |
| --- | --- | --- | --- |
| **구분** | **1차년도****(20 )** | **2차년도****(20 )** | **총계** |
| **비목** | **세목** | 전체개발비 | 지원요청개발비 | 전체개발비 | 지원요청개발비 | 전체개발비 | 지원요청개발비 |
| **직접비** | **인건비** |  |  |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  |  |
| **연구활동비2)** |  |  |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  |
| **위탁연구비** |  |  |  |  |  |  |
| **간접비** | **인력지원비** |  |  |  |  |  |  |
| **연구지원비** |  |  |  |  |  |  |
| **성과활용지원비3)** |  |  |  |  |  |  |
| **합계** |  |  |  |  |  | **1)** |

1) 지원요청 금액 총 합계는 전체개발비의 최대 75% (최대 10억)이내로 산정하여 기입

2) 연구활동비 중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 기술도입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검사, 특허정보조사),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만 지원

3)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기술임치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

**위와 같이 공동투자형기술개발 공모 과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별지 1 : 개발과제 제안 세부 내용(작성 후 제출)**

**※ 별지 2 : 개발비 비목별 소요 명세(작성 후 제출)**

**※ 별지 3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작성 후 제출)**

**※ 별지 4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별지 5 : 제안 신청 기술 보호 관련 유의 사항**

**# 별지 1 : 개발과제 제안 세부 내용**

**1. 개요 및 현황**

 **1-1. 개발기술 개요**

 ※ 기술개발의 현황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필요시 개발 대상기술 또는

 제품의 ‘기본 개념도 등 포함작성

 **□ 개발 필요성**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 기술의 독창성 및 도전성**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독창성, 신규성 및 차별성 등을 기존기술 및

 세계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파급효과**

 ※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서술

 **1-2. 관련기술 현황**

 ※ 관련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트렌드, 정부정책 방향, 문제점 및 향후

 전망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명기)

**2. 기술개발 준비현황**

 **□ 선행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안**

 표1. 국내외 관련지식재산권 현황

|  |  |  |
| --- | --- | --- |
| **지식재산권명** | **지식재산권출원인** | **출원국/출원번호** |
|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 (주)우리회사 | 한국/102009XXXX |
|  ②  |   |   |
|  ③  |   |   |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기입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기술개발 최종 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로 함축하여 간략히

 표현

 ※ 수요처의 기술지원 지도내용 포함하여 작성

 표2.목표달성도 평가지표

 ※ 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량화․수치화 하여야 하며 미흡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됨

 ※ 기술개발종료 후, 최종 개발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시료의 평균값을 계획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성능지표1)** | **단 위** | **최종 개발목표2)** | **세계최고수준****(보유기업/보유국)** | **가중치3)****(%)** | **객관적 측정방법** |
| **시료 수****(n≥5개)** | **시험규격4)** |
| 1. 예) 속도 | km | 55km 이상 | 60km(3M, 미국) | 20 | 10 |   |
| 2. 예) 소음 | db | 10db 이하 | 8db(노키아, 핀란드) | 15 | 10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 시료수 5개 미만(n<5개)시 사유 |   |
|  ◦   |
| □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   |
|  ◦ 예) 성능지표 1의 경우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한국 OOO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제출, 성능지표 2의 경우 자체평가 수행6) \* 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없을 경우 사유와 대체 방법을 명기 |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 주3)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주4)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를 명기

 \* 주5)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주6) 자체평가 수행은 주요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과제특성상 신청기업․ 위탁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

 **3-2. 기술개발 내용**

 ※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개발내용 서술

 (12개월 이상인 사업은 1차년도, 2차년도로 구분하여 기술개발내용 서술)

 ※ 수요처의 기술지원 지도 내용 포함하여 작성

 ※ 개발내용 및 범위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그림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

 ※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결과물은 개발목표와 연계하여 삼성전자에 제출할 수 있는 유·무형의 산출물을

 서술

 **3-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수혜 업체,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외주용역처리 등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  |  |  |
| --- | --- | --- |
| **수행기관** | **담당 기술개발 내용** | **기술개발 비중(%)** |
| 신청기업 |  |  |
| 공동개발기관 |  |  |
| 위탁기관 |  |  |
| 수요처 |  |  |
| 외주용역처리 |  |  |
| 총계 |  | 100% |

 \* 수행기관은 기술개발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감안하여

 작성요망

 \* 외주용역처리란 신청기업가 추진체계에는 없지만 목업(mock-up)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술개발 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3-4. 세부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차수 | 세부 개발내용 | 수행기관 | 기술개발기간 | 비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1차년도 | 1. 예) 계획수립 | A기업 |  |  |  |  |  |  |  |  |  |  |  |  |  |
| 2. 예) Concept 확정 | A기업 |  |  |  |  |  |  |  |  |  |  |  |  |  |
| 3. 예) 상세 설계 | A기업 |  |  |  |  |  |  |  |  |  |  |  |  |  |
| 4.  | A기업 |  |  |  |  |  |  |  |  |  |  |  |  |  |
| 5.  | 삼성전자/A기업 |  |  |  |  |  |  |  |  |  |  |  |  |  |
| 6.  | 삼성전자/A기업 |  |  |  |  |  |  |  |  |  |  |  |  |  |
| 2차년도 | 1.  | A기업 |  |  |  |  |  |  |  |  |  |  |  |  |  |
| 2.  | A기업 |  |  |  |  |  |  |  |  |  |  |  |  |  |
| 3.  | A기업 |  |  |  |  |  |  |  |  |  |  |  |  |  |
| 4.  | A기업 |  |  |  |  |  |  |  |  |  |  |  |  |  |
| 5.  | 삼성전자/A기업 |  |  |  |  |  |  |  |  |  |  |  |  |  |
| 6.  | 삼성전자/A기업 |  |  |  |  |  |  |  |  |  |  |  |  |  |
| 7.  | A기업 |  |  |  |  |  |  |  |  |  |  |  |  |  |

**4. 연구인력 주요 이력**

|  |  |  |  |
| --- | --- | --- | --- |
| 성 명(구분) | 경력사항 | 전 공(학위) | 최종학력 |
| 연 도 | 기 관 명 | 근무부서/직위 |
| (과제책임자) | ～ |  |  |  |  |
| ～ |  |  |
| (핵심개발자) | ～ |  |  |  |  |
| ～ |  |  |
| (핵심개발자)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난에 과제책임자, 핵심개발자(2인 이내) 등 기입

**5. 연구시설·장비보유 및 구입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시설 및 장비명** | **규격** | **구입 가격\*****(백만원)** | **구입****년도** | **용 도****(구입사유)** | **보유기관****(참여형태)** |
| 기보유시설·장비(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 자사보유 |   |   |   |   |   | (주)우리회사(신청 기업) |
|   |   |   |   |   |   |
| 소계 |   |   |   |   |   |
| 공동장비활용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장비 | 임차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구입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구입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6. 개발기술 활용 및 사업화방안**

 **6-1. 국내외 시장현황**

 **□ 목표시장의 경쟁상황**

 ※ 해외기업 및 대기업의 독점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 극복방안 서술

표3. 국내외 시장 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하거나,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아래표를 생략하고 관련 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논문 등 관련 자료 제시할 것

(단위 : 억원)

|  |  |  |
| --- | --- | --- |
| **구 분** |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 **예상 시장규모(20 년)** |
| 세계 시장규모 |  |  |
| 국내 시장규모 |  |  |
| 산출 근거 |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4) |

 표4.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할 것

|  |  |  |  |
| --- | --- | --- | --- |
| 경쟁사명 | 제품명 | 판매가격(천원) | 연 판매액(천원) |
|  ①  |   |   |   |
|  ②  |   |   |   |
|  ③ |   |   |   |

 **6-2.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개발 결과 특성이 반영된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과정을 자세히 설명

 **6-3. 양산 및 판로 확보 계획**

 ※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ㆍ판매전략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표5.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판매처 | 국가 명 | 판매 단가(천원) | 예상 연간판매량(개) | 예상 판매기간(년) | 예상 총판매금(천원) | 관련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표6.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  |
| --- | --- |
| **구 분** | **사업화 년도** |
| **( )년****(개발종료 해당년)** | **( )년****(개발종료 후 1년)** | **( )년****(개발종료 후 2년)** |
| **사업화 제품** |  |  |  |
| **투자계획(백만원)** |  |  |  |
| **판매 계획****(백만원)** | **내 수** |  |  |  |
| **수 출** |  |  |  |
| **계** |  |  |  |
| **수입대체효과(백만원)****(해당시)** |  |  |  |
| **고용 창출(명)** |  |  |  |

 **6-4. 고용창출 효과 및 고용의 질 향상**

 ※ 중장기적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자체적 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및 신규인력 채용 계획**

 **□ 고용유지를 위한 복리후생 등 기업 자체적 방안**

 **□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 기술인력 육성계획**

 **6-5. 개발제품의 수출 가능성**

 ※ 개발제품의 수출가능성 및 해외시장 발굴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해외 마케팅 전략 및 제품 경쟁력**

 **□ 해외시장(또는 고객)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계획**

**# 별지 2 : 개발비 비목별 소요 명세**

 ※ 과제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1. 년차별 총 소요 개발비**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구 분** | **현 금** | **현 물** | **소 계** |
| **1차년도****(20 )** | **직접비** | **내부인건비** | **기존** |   |   |   |
| **신규** |   |   |   |
| **외부인건비**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 **연구활동비**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위탁연구비** | **직접비** |   |   |   |
| **간접비** |   |   |   |
| **소 계** |   |   |   |
| **간접비****(현금)**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 계** |   |   |   |
| **1차년 합계** |   |   |   |
| **2차년도****(20 )** | **직접비** | **내부인건비** | **기존** |   |   |   |
| **신규** |   |   |   |
| **외부인건비**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 **연구활동비** |   |   |   |
| **연구과제추진비** |   |   |   |
| **위탁연구비** | **직접비** |   |   |   |
| **간접비** |   |   |   |
| **소 계** |   |   |   |
| **간접비****(현금)** | **인력지원비** |   |   |   |
| **연구지원비**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소 계** |   |   |   |
| **2차년 합계** |   |   |   |
| **총 합 계** |   |   |   |

**2. 1차 년도 소요 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역**

 **□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인력****구분** | **성명** | **직위** | **실지급액 (연봉/12)****(A)** | **참여율****(%)****(B)** | **참여기간****(월)****(C)** | **합 계(A×B×C/100)** |
| **현금** | **현물** | **계** |
| **내부****인건비** | **기존****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인력**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외부****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합 계** |   |   |   |

 - 연구장비·재료비 등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역****(품명)** | **규격** | **수 량****(회수)** | **단 가****(천원)** | **금 액(천원)** |
| **현금** | **현물** | **계** |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시약․재료구입비 |   |   |   |   |   |   |   |
|   |   |   |   |   |   |   |
| 시작품제작경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수용비 및수수료 |   |   |   |   |   |   |   |
|   |   |   |   |   |   |   |
|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 수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자인정보∙개발및컨설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사무용품비및연구환경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의비 |  |  |  |  |  |  |  |
| 초과근무식대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합계** |  |  |  |

 -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시에만 작성)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  |  |  |
| --- | --- | --- |
| **비 목** | **현 금** | **구 성 비(%)** |
| **1. 직 접 비** |   |   |
| **2. 간 접 비** |   |   |
| **합 계** |   | 100% |

 ·직접비 : 인건비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성 명** | **직 위** | **소 속** | **실지급액(연봉/12)****(A)** | **참여율****(%)****(B)** | **참여기간****(월)****(C)** | **합계****(A×B×C/100)** |
| **현 금** | **현 물** | **소 계** |
| **인건비** |   |   |   |   |   |   |   |   |   |
| **학생인건비** |   |   |   |   |   |   |   |   |   |
| **외부인건비** |  |  |  |  |  |  |  |  |  |
| **합 계** |   |   |   |

 ·직접비 :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만 작성)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과정명** | **월급여** |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총급여** | **비고** |
| **박사후과정** |  |  |  |  |
| **박사과정** |  |  |  |  |
| **석사과정** |  |  |  |  |
| **학사과정** |  |  |  |  |
| **총액** |  |  |

 ·직접비: 위탁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만 작성)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구분** |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 **계****(D=A-B+C)** |
| **금액** |   |   |   |   |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등 소요명세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역****(품명)** | **규격** | **수 량****(회수)** | **단 가****(천원)** | **금 액(천원)** |
| **현금** | **현물** | **계** |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 |   |   |   |   |   |   |   |
|   |   |   |   |   |   |   |
| 시약․재료구입비 |   |   |   |   |   |   |   |
|   |   |   |   |   |   |   |
| 시작품제작경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수용비 및수수료 |   |   |   |   |   |   |   |
|   |   |   |   |   |   |   |
|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 수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자인정보∙개발및컨설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사무용품비및연구환경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의비 |  |  |  |  |  |  |  |
| 초과근무식대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합계** |  |  |  |

 ·간접비 소요명세

|  |  |  |  |  |
| --- | --- | --- | --- | --- |
| **구 분** | **단 가**  | **수 량(건)** | **금 액(천원)** | **용 도** |
| **인력지원비** |   |   |   |   |
| **연구지원비**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합 계** |    |   |

 **□ 간접비**

|  |  |  |  |  |
| --- | --- | --- | --- | --- |
| **구 분** | **단 가**  | **수 량(건)** | **금 액(천원)** | **용 도** |
| **신청 기업** | **인력지원비** |   |   |   |   |
| **연구지원비** |   |   |   |   |
| **성과활용지원비**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3. 2차 년도 소요 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역**

 ※ 상기 1차년도 사업비목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작성요령(작성 후 작성요령은 삭제)

**[직접비]**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신청 기업의 과제책임자는 참여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참여율은 해당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며, 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단,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신규인력 인건비는 신청 기업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 인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말한다.

◦ 외부인건비는 신청 기업,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외부연구원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일반 기술개발과제) 기업소속 직원 및 대학․국공립연구기관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

◦ (지식서비스 및 S/W 기술개발 과제) 기술개발의 주된 내용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또는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  |
| --- | --- |
| **구 분** | **산 정 기 준** |
| **내부인건비** |

|  |  |
| --- | --- |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적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중소기업, 대학 등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 개인사업자 대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3,111천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노동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
| **외부인건비** |

|  |  |
| --- | --- |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외부기관에소속된 자 | ▪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 단, 기업,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외부인건비 계상불가 |
| 급여총액을 알 수없는 외부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

**<연구장비․재료비>**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아래의 세부 사용처를 명기

◦ 또한, 비고란은 사용주체를 명기(신청 기업, 참여기업 등)

 **가) 연구시설․장비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 내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신청 기업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⑥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신청 기업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신청 기업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기업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활동비>**

 **가) 국외여비**

 ① 연구원의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다)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마) 디자인 정보·개발 및 컨설팅비**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연구과제추진비>**

 가) 직접비(현물포함)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기관의 연구과제 추진비의

 합계는 1천만원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국내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계상 할 수 있다.

 라)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다.

 마)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1일 1만원 이내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는 신청 기업(참여기업 포함)의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직접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소의 정규직원으로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을 위해 인건비를 현물로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  |  |
| --- | --- |
| **세 목** | **산 정 기 준** |
| **학생****인건비** |

|  |  |
| --- | --- |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적용 대학 |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연구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간접비]**

◦ 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 신청 기업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간접비 사용용도>**

|  |
| --- |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 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④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회계감사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 |

별첨1.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별첨2.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별첨3.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별첨 1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  |  |  |
| --- | --- | --- | --- |
| **① 시설․장비명** |  | **② 과제번호** |  |
| **③ 규격** |  | **④ 수량** |  |
| **⑤ 용도** |  |
| **⑥ 소요금액(천원)** |  | **⑦ 구입국(처)** |  |
| **⑧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  |
|  |
| **⑨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
|  |
| **⑩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
|  |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 3천만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작성**

**※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별첨 2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할 것, \* 도입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따로 작성

**1. 과제 개요**

|  |  |
| --- | --- |
| **사 업 명** |  |
| **과 제 명** |  |
| **기 관(업) 명** |  | **과 제 번 호** |  |

**2.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  |  |
| --- | --- |
| **구 분** | **내 용** |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소분류“기준으로 작성 ex) A.22 투과전자현미경  |
| **시설장비명** | **한글** |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
| **영문** |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
| **담당자**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  |  |  |  |
| **제작사 및 모델명**(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 **제작국가명** | **제작사명** | **모델명** |
|  |  |  |
| **취득방법**(해당란에 ‘○’표시) | **구 매** | **임 대** | **제작의뢰** | **자체제작** | **기타**(직접 기재) |
|  |  |  |  |  |
| **구축비용**(단위 : 백만원) | **단가** | **수량** | **총금액** |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 **적용환율(외자일 경우)** |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
|  |  |  |  |  |  | ’00년 |
|  |  |  | ’00+1년 |
| **구축일정** | **발주예정일** | **설치예정일** |
| YYYY-MM-DD ~ YYYY-MM-DD | YYYY-MM-DD ~ YYYY-MM-DD |
| **구축장소**(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설치예정 지역명** | **설치예정 기관명** |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  |  |  |
|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
| **분석** | **시험** | **교육** | **계측** | **생산** | **기타** |
| (해당란에 ‘○’표시) |  |  |  |  | ※ 직접기재 |
|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외산장비****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  |  |
| --- | --- |
| **구 분** | **내 용** |
| **사업(연구)****부합성**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연구장비의****중복성**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 **연구장비의 활용성**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 **연구장비의 적정성**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 **장비운영의 계획성** |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
| **구분**(신규, 기존) | **성명**(채용예정자는 OOO) | **소속부서명** | **최종학위**(고졸, 학사, 석사, 박사) |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 **담당장비수**(신청장비 포함) |
|  |  |  |  |  |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 없음).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 | **장비명** | **제작사** | **모델명** | **취득연도** | **취득****금액**(단위 : 백만원) | **설치 기관명**(설치지역) | **지역 중복 여부****1)** | **공동활용****여부****2)** | **장비 등록 번호****3)** | **신청기관의****자체검토 의견** | **검색 키워드** |
| 1 | 한글명 |  |  |  |  |  |  |  |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
| 영문명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  |
| --- |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시설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 기타**

※ 그 외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함

[ 별첨 3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작성, 견적서 반드시 첨부 할것**

**Ⅰ.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순번** | **과제명** | **시설장비명** | **총구축****비용** |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 **비고**(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류1(기술분야)**(해당란에 ‘○’표시) | **기초과학** | **생명** | **해양** | **우주·천문** | **에너지** | **환경** | **기계부품****소재** | **정보전자****통신** |
|  |  |  |  |  |  |  |  |
|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해당항목 선택)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
| **분류3(사용용도)**(해당란에 ‘○’표시) | **시험용** | **분석용** | **교육용** | **계측용** | **생산용** | **기타(직접기재)** |
|  |  |  |  |  |  |
| **분류4(중점투자분야)**(해당란에 ‘○’표시) | **주력기간산업****기술 고도화** | **신산업 창출****핵심기술개발 강화** |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 **국가주도기술****핵심역량 확보** | **기초과학‧융합****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
|  |  |  |  |  |
| **분류5(활용목적)**(해당란에 ‘○’표시) | **공동활용서비스****(Public Use)** | **공동활용허용****(Joint Use)** | **단독활용****(Private Use)** |
|  |  |  |

※ 분류Ⅰ(기술분야)는 1차 심의분과를, 분류Ⅱ(시설장비표준분류) 2차 심의분과를 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수요조사 여부**(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  |  |  |  |  |  |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시설장비 구축 개요**

|  |  |
| --- | --- |
| **구 분** | **내 용** |
| **과제명** |  |
| **시설****장비명** | **한글** |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
| **영문** |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
| **제작사 및 모델명**(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 **제작국가명** | **제작사명** | **모델명** |
| 국산 | 대한민국 |  |  |
| 외산 | 미국 |  |  |
| **취득방법**(해당란에 ‘○’표시) | **구 매** | **리 스**1) | **렌 탈**2) | **제작의뢰** | **자체제작** | **기 타**(직접 기재) |
|  |  |  |  |  |  |
| **구축비용**(단위 : 백만원) | **단가** | **수량** | **총금액** | **'**00**년****정부출연금****금액** | **'**00**년****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 **적용환율(외자일 경우)** |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
|  |  |  |  |  |  | '00년 |
|  |  |  | '00+1년 |
| **구축일정** | **발주예정일** | **설치예정일** |
| YYYY-MM-DD ~ YYYY-MM-DD | YYYY-MM-DD ~ YYYY-MM-DD |
| **구축장소**(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설치예정 지역명** | **설치예정 기관명** |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  |  |  |
| **시설장비 용도** | ○ -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시설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번** | **시설****장비명** | **제작사** | **모델명** | **취득연도** | **취득****금액**(단위 : 백만원) | **설치 기관명**(설치지역) | **지역 중복 여부****1)** | **공동활용****여부****2)** | **시설장비 등록 번호****3)** | **신청기관의****자체검토 의견** | **검색 키워드** |
| 1 | 한글명 |  |  |  |  |  |  |  |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
| 영문명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  |
| --- |
|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시설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  |
| --- | --- |
| **구 분** | **내 용** |
| **사업(연구)****부합성** | ○-※ 신청시설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장비인지 기술 |
| **국가전략적 필요성**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시설장비인지 기술※ 신청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시설장비인지 기술 |
| **연구장비의****중복성**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시설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동일․유사시설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시설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시설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 **연구장비의 활용성**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 **연구장비의 적정성**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시설장비인지 기술※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시설장비 가격, 타 제작사 시설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 **장비 운영의 계획성** | **신청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
| **구분**(신규, 기존) | **성명**(채용예정자는 OOO) | **소속부서명** | **최종학위**(고졸, 학사, 석사, 박사) |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 **담당시설장비수**(신청시설장비 포함) |
|  |  |  |  |  |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  |
| ---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삼성전자주식회사 귀중**본인(작성자)은 귀사가 본인 및 기타 적합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본인의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 수집항목 - 필수사항 : 작성자 성명, 직책, 연락처, e-mail주소 선택사항 : 없음 - 수집·이용목적 : 본인 확인, 제안서 접수/심사/결과통보/사업화 등 공동투자형기술개발과제 공모 서비스 제공 - 보유·이용기간 : 본인이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단, 상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공동투자형기술개발과제  공모 서비스 제공이 지체되거나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별지 4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별지 5 : 신청 기술 보호 관련 유의 사항**

 ·삼성전자는 제출된 기술 등에 관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다만, 선정된 기술에 한하여 지식경제부의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과제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예외로 함

 ·신청자는 선정 결과 발표 전까지 응모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철회 신청되거나 심사 결과 선정되지 않은 기술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폐기함

 ·선정된 신청자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고 개발을 완료한 경우,

 해당 개발결과물은 상호 협의 하에 지적재산권을 공동소유로 함

 다만, 신청자가 사전에 이미 개발 완료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삼성전자에 고지한 기술 등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원된 개발비에는 이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됨

 ·신청자는 개발이 완료된 경우 우선적으로 삼성전자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세부적인 거래 조건은 추후 별도 협의함

 ·본 공모제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삼성전자와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는 신청자에게 조정,

 중재 또는 소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줌

 ·삼성전자가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